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069 발의연월일: 2024. 12. 30.

발 의 자:김현정·박홍배·이기헌

부승찬・전재수・손명수

이개호 · 정태호 · 김기표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부업자 임원 등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을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 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

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제1항제5호나목 삭제 등).

법률 제 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1항제5호나목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의2 중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을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3 중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나목"을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5		
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			
할 것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	<u><삭 제></u>		
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			
다. · 라. (생 략)	다. • 라.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다음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			
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			
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자

- 3. ~ 7. (생략)
- ②·③ (생 략)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7

- ① (생 략)
- ②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2의2.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 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 호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2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나목 또는 같은 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4. ~ 8. (생략)

③ ~ ⑧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u>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3조의5제1항제5호
가목
2의3
제3조의5제1항제5
 호가목
2의4. ~ 8.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